

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

의안 번호	'2000 - 1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0. 4 . 14.
제안자 : 거창군수

□ 제안사유

- '2000. 1.29일 거창도시계획이 재정비 변경 결정됨에 따라(거창군 고시 제2000~2호) 재정비 내용에 맞게 거창읍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면적을 조정하고, 남상 및 마리 일부 도시계획 편입지역에 대하여 추가 부과지역으로 하는 등
-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거창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변경(추가지정) 고시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현황

【단위 : km²】

구분	도시계획 고시면적			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면적			사유
	당초	재정비	증감	현행	변경	증감	
계	31.158	31.158	0	30.440	31.158	증0.718	
거창읍	26.774	26.761	△0.013	26.774	26.761	△0.013	남상면 경계오차로 인한 면적 조정
남상면	0.263	0.276	증0.013	0	0.276	증0.276	추가 고시
마리면	0.455	0.455	0	0	0.455	증0.455	추가 고시
웅양면	2.773	2.773	0	2.773	2.773	0	변동 없음
가조면	0.893	0.893	0	0.893	0.893	0	변동 없음
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지정

- 거창읍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면적 조정

현행 : 26.774km² ⇒ 변경 : 26.761km² (감 0.013km²)

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

【단위 : km²】

행정구역명	도시계획 면적	부과지역 고시면적	사 유
남상면 월평리	0.276	0.276	정장리 공업단지 및 국농소 인접 지역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
마리면 하고리	0.455	0.455	83년 행정구역 개편시 마리면 편입 지역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

○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고시지역

【단위 : km²】

도시계획 지구명	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				비 고
	읍 면	면 적	리 별	대 상 지 역	
계	5개 읍면	31.158	20개 리		
거 창 도시계획	거창읍	26.761	상림리	전 지역	면적 조정 (△ 0.013km ²)
			중앙리	전 지역	
			대동리	전 지역	
			대평리	전 지역	
			김천리	전 지역	
			송정리	전 지역	
			정장리	일 부(정장, 국농소)	
			장팔리	일 부(장팔)	
			서변리	일 부(모곡, 사지)	
			양평리	일 부(김용)	
	가지리	전 지역			
		마리면	0.455	하고리	일 부(소곡)
	남상면	0.276	월평리	일 부(월평)	추가 고시
웅 도시계획	웅양면	2.773	동호리	일 부(동호)	
			죽림리	일 부(운평, 구암)	
			노현리	일 부(노현, 원촌, 화동)	
			산포리	일 부(산포, 석정)	
가 도시계획	가조면	0.893	대초리	일 부(방촌)	
			마상리	일 부(상마, 중마1구, 2구)	
			수월리	일 부(월포)	

※ 1. 부과대상 지역도 : 별첨

2. 기타 부과지역 지번별 상세내역은 관련 도시계획 도면에 의함.

○ 도시계획세 적용

■ 부과대상

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

■ 과세표준

▪ 건축물 : 과세기준일 (매년 5.1) 현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

▪ 토 지 : 과세기준일 (매년 6.1) 현재 토지의 시가표준액

■ 세 율 :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,000분의 2

■ 부과징수 :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

■ 재원활용 :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

□ 관련근거

○ 지방세법 제238조(부과징수) 제2항

○ 거창군세조례 제85조 (부과지역의 고시)